자율준수협의회 운영지침

제1장 총칙

제1조 (목적)

이 지침은 주식회사 건축사사무소 건원엔지니어링(이하 '회사'라 함)의 임직원이 경쟁법 및 필수법규의 준수를 위하여 지켜야할 기본적인 절차와 기준을 정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.

제2조 (적용 범위 및 개정 검토)

회사의 모든 임직원은 이 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하며, 자율준수관리자는 업무환경 및 공정거래 법규의 변화에 따라 연 2회 이상 개정 검토를 수행해야 한다.

제3조 (용어의 정의)

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.

① "자율준수"란 회사에 적용되는 경쟁 관련 법령, 필수 법규 등에서 정한 요건을 자율적으로 충족시키는 것을 말한다.

② "경쟁법"이란 공정거래법,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,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표시·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업무와 관련하여 경쟁의 촉진과 공정거래 질서의 유지를 목적으로 제정되는 제반 법규를 말한다.

③ "필수 법규"란 회사가 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반드시 준수하여야 하는 법령 및 하위 규정을 말한다.

④ "경쟁 당국"이란 경쟁법의 집행을 담당하는 정부 기관으로 공정거래위원회를 말한다.

⑤ "자율 준수프로그램"이란 자율 준수를 구체적으로 실천하기 위한 행동 요소와 실행 방안을 제시한 것이다.

⑥ "자율 준수관리자"란 자율 준수프로그램의 운영을 총괄하는 자를 말한다.

⑦ "자율 준수 편람"이라 함은 공정거래를 자율적으로 준수하기 위한 내부 가이드 라인으로써 공정거래 법규, CP운영, 자율점검을 위한 체크리스트 등으로 구성된 자율준수 매뉴얼이다.

제2장 조직구조 및 업무분장

제1절 대표이사

제4조 (대표이사의 역할)

① 대표이사는 자율준수가 기업운영의 중요한 가치임을 보장한다.

② 대표이사는 자율준수 프로그램이 독립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자율준수관리자에게 충분하고 독립적인 권

한을 부여한다.

③ 대표이사는 효과적인 자율준수 프로그램 운영 및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예산과 조직을 지속적으로 지원한다.

제5조 (대표이사의 권한)

① 대표이사는 자율준수 프로그램의 운영에 관하여 최종적인 의사결정 권한을 가진다.
② 대표이사는 자율준수 프로그램의 구축과 운영을 위하여 예산과 자원을 배분할 수 있다.
③ 대표이사는 자율준수 프로그램의 운영에 관하여 임직원의 역할과 책임을 부여할 수 있다.

제2절 자율준수관리자

제6조 (자율준수관리자의 선임)

① 회사는 자율준수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며 다음 각호의 기준을 충족시키는 자로 한다.
1. 자율준수관련 업무를 실효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 정도의 직위 및 직책을 가지는 자
2. 공정거래 관련 법규에 대한 지식 혹은 자율준수 프로그램을 포함한 준법경영에 경험과 지식을 갖춘 자

② 자율준수관리자는 대표이사의 직접 임명을 통해 선임 및 해임된다.
③ 회사는 자율준수관리자의 임명 사실과 역할을 이메일, 업무시스템을 통해 모든 임직원에게 명확히 전달하여야 한다.
④ 자율준수관리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, 연임할 수 있다.

제7조 (자율준수관리자의 권한과 의무)

① 자율준수관리자의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1. 자율준수 실태에 대한 점검, 조사권
2. 공정거래 관련 법규 및 자율준수 프로그램운영기준을 위반한 사항에 대한 개선, 시정요구권
3.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제출요구권
4. 임직원의 위법, 부당행위에 관한 대표이사에 보고, 시정요구권
5. 기타 공정거래 자율준수 관련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대표이사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권한

② 자율준수관리자의 의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1.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에 따른 직무수행
2. 자율준수프로그램의 독립적이고 효율적인 운영

③ 자율준수관리자는 영업,구매 등 자율준수 관련 업무와 이해관계가 상충 될 위험이 높은 업무를 담당할 수 없다.

제8조 (자율준수관리자의 직무)

① 자율준수관리자는 공정거래 자율준수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.
1. 자율준수와 관련된 계획의 수립
2. 자율준수프로그램의 운영

3. 자율준수 프로그램 운영계획, 현황 및 실적을 대표이사에 반기 1회이상 보고
4. 점검결과에 대한 후속조치(시정요구, 인사위원회회부, 인센티브부여 등)
5. 기타 경쟁법을 위반한 사항에 대한 대선 및 시정요구
6. 경쟁법 및 관련 법령·제도 등 자율준수프로그램에 대한 임직원 교육
7. 자율준수 운영규정 및 하위지침의 제·개정 및 운영
8. 자율준수 활동계획과 운영결과에 대한 대표이사 보고
9. 자율준수활동에 대한 기록관리
10. 기타 자율준수프로그램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② 자율준수관리자는 필요한 경우 본 규정에 의한 직무의 일부를 유관부서 등 임직원으로 하여금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.

제9조 (자율준수관리자의 독립성 보장)

① 회사는 자율준수관리자가 자율준수에 관한 업무를 공정하에 수행 할 수 있도록 독립성을 보장하여야한다.
② 자율준수관리자는 자율준수 관련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대표이사에 직접/적시에 보고 할 수 있다.
③ 회사는 자율준수 관리자가 자율준수 프로그램 운영기준상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가 아닌 이상 자율준수 관련 업무 수행과 관련된 사유로 인사상의 불이익을 부과해서는 아니된다.

제3절 자율준수협의회

제10조 (설치 및 구성)

① 회사는 자율준수 프로그램의 추진 및 운영과 관련한 자문 및 협의 기구로서 자율준수협의회를 설치 및 운영한다.
② 자율준수협의회 의장은 자율준수관리자로 한다.
③ 자율준수협의회 위원은 공정거래 자율준수관련 업무 관련성, 직위, 역할을 고려하여 자율준수관리자가 지정한 자로 구성한다.
④ 자율준수관리자는 전항에 따른 위원 이외에도 자율준수협의회 업무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회사 조직도 상의 구조 및 취급업무와 관련된 법적 위험등을 고려하여 관련 부서 내지 본부별로 "자율준수담당자"를 지정 할 수 있다.

제11조 (운영)

① 자율준수관리자는 정기적으로 자율준수협의회를 개최하여야한다. (반기 1회 이상)
② 자율준수관리자는 자율준수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수시로 자율준수협의회를 개최 할 수 있다.
③ 그 밖에 자율준수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자율준수 관리자가 정할수 있다.

제12조 (역할)

자율준수협의회의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① 자율준수의 기본방침 설정
② 공정거래 관련 법규 동향 공유 및 전파

③ 자율준수 관련 중요사항에 관한 심의·의결 및 권고·자문
④ 공정거래 관련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, 제재 등과 관련되는 중요사항 심의 및 필요사항 권고, 자문
⑤ 자율준수와 관련하여 발생되는 부서간 이해관계 조정
⑥ 법 위반 행위 사전예방을 위한 자체 점검 실시 및 감독
⑦ 기타 자율준수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제4절 임직원

제13조 (임직원의 역할 및 의무)

① 모든 임직원은 자유경쟁과 공정함의 가치를 중시하고 공정거래관련 법령을 준수하면서 업무를 수행하고, 기업간 공정한 거래 및 상생협력 문화가 조성 될 수 있도록 한다.
② 모든 임직원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된 공정거래 관련 법규 및 자율준수프로그램운영기준을 숙지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.
③ 모든 임직원은 공정거래 관련 법규 위반 여부를 스스로 판단하기 어려운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제26조에 따른 사전업무협의를 요청한다.
④ 모든 임직원은 공정거래 관련 법규 및 자율준수 프로그램 운영기준 위반사실을 발견한 경우, 즉시 신고 또는 보고하여야 한다.
⑤ 모든 임직원은 자율준수 교육을 성실히 이수하여야 한다.
⑥ 모든 임직원은 자율준수 프로그램 효과성 평가에 적극적으로 응하여야 한다.
⑦ 모든 임직원은 자율준수와 관련된 자율준수관리자의 지시사항을 성실히 따라야 한다.

제3장 자율준수프로그램의 운영

제14조 (자율준수편람)

① 자율준수관리자는 경쟁법 자율준수를 위한 세부지침인 자율준수편람을 제작하여 배포하여야한다.
② 자율준수편람은 회사의 조직 규모, 구조, 사업모델 및 부서 특성, 다수 이해관계자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작성되어야한다.
③ 자율준수편람은 경쟁법 개요 및 제재기준, 사례, 판례, 행동지침, 질의응답, 각 업무 부문별 구준, 자율점검 방법 등 내용을 포함해야하며 다양한 사용자를 감안하여 이해하기 쉽게 제작되어야 한다.
④ 자율준수 전담부서는 반기별 1회이상 경쟁법 및 정책변경사항의 반영을 위한 자율준수편람 개정검토를 실시하여야한다.

제15조 (교육프로그램)

자율준수관리자는 자율준수프로그램운영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한다.
① 임직원을 대상으로 계층별, 부서별, 업무별로 교육대상 및 과정을 구분하여 월 또는 분기단위 연간계획을 수립한다.
② 임직원들 대상으로 정기교육을 실시하여야하며, 필요한 경우 수시로 교육을 실시 할 수 있다.

③ 법 위반 가능성이 높은 부서 및 경쟁법 위반자에 대해 교육을 실시하고 교육 시행후 이해도 측정을 실시한다.
④ 교육 후 효과성 평가를 실시하고 차기교육에 그 결과를 반영한다.
⑤ 자율준수 교육과 관련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자율준수관리자가 별도로 정할 수 있다.

제16조 (모니터링제도)

자율준수관리자는 아래 각 사항에 해당하는 방법에 의하여 자율준수프로그램의 준수여부를 확인하여 반기1회 이상 최고경영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① 임직원의 자율준수 실태 등에 대한 점검 및 조사
② 자율준수관리자의 요구에 의하여 제출된 시정 조치서, 보고서 등 각종 자료의 검토 및 확인
③ 모니터링과 관련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자율준수관리자가 별도로 지정할 수 있다.

제17조 (내부고발)

① 경쟁법 위반 사실을 발견한 임직원은 자율준수전담부서 대면제보 또는 유선, 홈페이지 '제보하기'로 제보하여야 한다.
② 회사는 내부고발자에 대하여 철저히 비밀을 보장하여야하며, 신고를 이유로 업무상·신분상의 어떠한 불이익한 처우도 하지 아니한다. 단, 허위사실을 신고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.
③ 경쟁법 위반 사실을 신고하여 회사의 손실을 예방한 공로가 있는 임직원에 대해서는 포상 또는 인센티브를 부여 할 수있다.

제18조 (경쟁법 위반 임직원에 대한 제재)

① 자율준수관리자는 경쟁법 준수 여부점검결과 적발된 경쟁법 위반자에 대하여 사규 및 인사규정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위반정도에 상응하는 제재조치를 하여야한다.
② 자율준수관리자는 경쟁법 위반 사항에 대하여 당해 임직원에게 시정을 요구 할수 있다.
③ 자율준수관리자는 경쟁법 및 필수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재발방지 활동을 시행한다.

제19조 (경쟁법 준수 임직원에 대한 포상 또는 인센티브)

① 자율준수관리자는 경쟁법 준수 및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 확산에 기여한 임직원에 대하여 포상 또는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다.
② 자율준수관리자는 제1항의 집행을 위하여 예산을 편성하여야하며, 실제 집행한 사례가 있는 경우 임직원에게 공지하여야한다.

제20조 (문서관리)

① 자율준수에 관한 기본 문서들은 지율준수관리자의 책임 아래 분류 및 보관되어야 한다.
② 자율준수 활동에 관한 모든 문서는 정확하게 기록하여야 하며, 최신의 정보를 담아야 한다.

제17조 (효과성 평가)

① 자율준수관리자는 자율준수 프로그램이 효과적으로 운영되는지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, 모니터링 결과와 함께 반기1회이상 경영진회의 또는 대표이사에게 정기적으로 보고하여야 한다.
② 효과성 평가 및 모니터링 결과 발견된 문제점에 대한 제도개선 또는 시정조치를 이행하고, 컴플라이언스 운영관련 경영사항에 반영하여야 한다.
③ 효과성 평가와 관련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자율준수관리자가 별도로 정할 수 있다.

제18조 (공시)

자율준수관리자는 경쟁법상 공시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, 자율준수 프로그램의 운영사항을 임직원에게 사내업무 게시판, 뉴스레터, 사내 이메일 등 다양한 방법으로 알려야 한다.

제19조 (제정 및 개정)

① 자율준수관리자는 대표이사의 승인을 거쳐 본 지침을 제정 및 개정한다.
② 자율준수관리자는 본 지침을 제정 또는 개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율준수협의회 위원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.

부칙

1. 이 지침은 2024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(별첨1)

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조직도

